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·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「관광진흥법」(법률 제21741호, 2026. 6. 2. 공포, 2026. 12. 3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,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41조의7 신설)
 -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대상 지역, 대상자의 요건, 발급 주체, 발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발급 요건·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함.
 - 디지털관광주민증의 구체적인 혜택처 범위, 소지자의 혜택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.
 -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의 대상, 내용, 환류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영 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위임·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65조 개정)
 - 전담여행사의 지정·갱신 심사를 위한 업무를 업종별 관광협회 위임위탁
 -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임·위탁 하도록 규정함.
-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66조의2 개정)
 -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규정함.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전담여행사의 지정·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기대